공개용

2024년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종합감사 결과

2024. 4.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

[감 사 관]

2024년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종합감사 결과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4. 1. 22. ~ 1. 26.(5일간)

○ **감사범위**: 2021. 1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1개반 5명** * 시민감사관 1명 참여

○ **감사중점**

- 사회교육 강사 채용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
- 새로일하기센터, 창업지원센터 운영 실태
- 청렴 취약 업무(복무, 계약, 회계 등) 집행 적정 여부
-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
- 직전 감사 등 이행 실태, 동일 반복 지적 사례 확인 등

2.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단위: 건, 천원,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기관 경고
계	시정	주의	개선	통보	계	추징	추급	계	징계	훈계	
9	1	7	1	-	-	-	-	-	-	-	-

○ 처분요구 목록

(단위: 건, 천원, 건/명)

연번	분야	지적사항	관련부서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1	복지관운영	사회교육강사 채용 업무 소홀	○○팀	주의 개선	-	-	-	
2	복지관운영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소홀	□□팀	주의	-	-	-	
3	복지관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리 소홀	□□팀	주의	-	-	-	
4	인 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소홀	□□팀	시정 주의	-	-	-	
5	공사계약	하자 검사 절차 미이행	□□팀	주의	-	-	-	
6	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 자체교육 미실시 및 전문교육 미이수	□□팀	주의	-	-	-	
7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및 관리 소홀	□□팀	주의	-	-	-	

3. 처분요구서

※ 명세 별첨

4. 수범사례

연번	구분	내 용	비고
1	수범사례	「2022년 인천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2	수범사례	수강생 재능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3	수범사례	기능대회참여를 통한 여성의 능력 개발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사회교육강사 채용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여성복지관은 20**년부터 20**년까지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해 사회교육강사 공개모집 관련 공고 및 서류·면접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일반강사를 위촉하였다.

1. 자격증 분야 제출서류 공고 소홀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강사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강사관리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르면 여성복지관의 정규과정에 출강하는 일반강사는 공고를 통한 모집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위촉하게 되며, 강사의 자격 기준은 1.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유사 분야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졸업이상자로서 해당 유사 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유사 분야 4년 이상 강의와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관장이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강사관리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위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강사로 지원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강사 지원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 자격증 사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그리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고, 여성복지관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모집 강좌 현황 및 강사 자격 기준, 서류·면접 심사의 기준이 되는 심사표 세부 내용 및 선발방법이 포함된 「사회교육강사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 일반강사 위촉 등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관에서는 관련규정 및 모집계획을 토대로 일반강사 위촉을 위한 강사 공개모집 추진 시, 응시 자격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집 강좌 및 선발 예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공고하되,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정하게 심사되어 우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가 선발되도록 제출 서류 중 누락 된 목록은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격요건 확인 및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격증, 공인어학 성적 증명서 등 제출 서류 목록을 공고문에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여성복지관의 강사 모집 관련 공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서류심사 항목 중 자격증(총 10점 배점) 심사 시, 지원자의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해 점수 산정을 해야 함에도, 필요한 자격증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고하지 않고 '해당 분야 자격증(해당자에 한함)'으로만 게시하였으며, 20**. **. **.에는 '❖·❖❖ 영어 회화, 중국어, 일본어 회화' 강사 모집 내용이 포함된「20**년 사회교육강사 공개모집」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어학 분야 자격 서류심사 시, 자격 확인의 주요 심사 항목이자, 점수산정 증빙자료인 '공인어학 성적' 증명서 제출을 공고하지 않음에 따라, 어학 분야 지원자들의 자격 배점이 배제된 채 서류심사가 되는 등 자격을 갖춘 지원자의 정당한 자격심사를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서류심사 및 합격자 결정 등 소홀

「강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르면 여성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정규 교육 과정에 출강할 강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접수, 강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서류·면접 등 심의 절차를 거쳐 위촉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자의 해당 직무수행 관련 자격 등을 서면 심사할 때는 지원자가 접수 기간에 제출한 강의·실무 경력, 학력 및 자격증 취득, 수상 경력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항목별 점수를 각각 산정하고, 서류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며, 점수합계가 과목별 최상위 3명에 해당되는 자를 면접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복지관에서는 사회교육강사 공개모집 시, 공지된 서류 접수일(접수시간 포함) 외에는 접수가 불가함을 공고문에 명확히 공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사 지원자의 증명서류 누락 방지, 경력 인정 범위, 서류 발급기준일 등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고문에 공통으로 게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관은 「강사관리 운영규정」 등에 따른 공정한 모집심사 절차를 거쳐 단계별 합격자가 결정되도록 지원자의 제출 서류상 발행일이 공고문에 게시된 대로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인지, 그리고 지원자의 강의·실무 경력 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지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이러한 요건에 부합된 자료를 근거로 강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항목별 배점 등 심사표 기준에 따라 착오 없이 심사하여 합격 기준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합격 처리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경력분야 증빙서류 확인 소홀

강사 공개모집과 관련해 여성복지관에 접수된 지원자별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 과목 강사로 지원한 ◉◉◉의 경우 공고문에 게시된 서류접수 기간 내에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사항을 검증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서류심사 시 경력 분야 점수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심사위원 ○명 모두 점수(**점)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 평균 점수 **점으로 서류심사에서 불합격되어야 할 지원자 ◉◉◉이 평균 점수 **점으로 서류심사(면접 대상) 합격 처리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리고 여성복지관은 경력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 시, 배점 기준이 세분된 경력 기간별 점수산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원자로부터 강의·근무 경력기간이 '연월일' 단위로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 및 ❄❄❄ ❄❄❄❄❄ 강좌에 지원한 ◍◍◍ 등 ○명에 대해서는 출강·근무 경력이 '연월' 단위로만 불분명하게 기재된 서류를 그대로 제출받아 심사하였고, ▣▣▣, ◈◈◈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서류심사에 반영하는 등 객관적 서류심사의 기준이 되는 증빙서류의 검증을 소홀히 하였다.

(2) 심사항목별 배점기준과 상이한 점수부여 등

여성복지관에서 20**년부터 20**년까지 실시한 사회교육강사 모집 관련 서류심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류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심사 항목별 세부 기준을 자세히 검토한 후, 지원자의 자격요건과 항목별 배점 기준이 일치되도록 점수를 산출해야 함에도, 전문학사 취득자인 ▣▣▣, ◐◐◐, ◈◈◈, ◑◑◑에 대해서는 학사학위 취득자로 오인해 원점수보다 *점 높은 *점이 부여되었고, ◑◑◑, ◎◎◎◎◎◎는 ✡✡✡ 회화 지원자로, 어학성적 이외 자격증 분야의 심사 배점은 제외해야 함에도, 각각 *점과 *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지원자 ▥▥▥, ▤▤▤의 경우에는 강사 지원 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증인 ✪✪✪✪ 지도자 자격증 사본과 ❀❀ 산업기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바, 각각 *점과 *점을 부여했어야 함에도, ○명 모두 *점 처리하였고, ◍◍◍, ▨▨▨, ▩▩▩은 강사 지원 시 제출한 자격증 배점 기준보다 한 단계 높거나 낮은 단계의 자격증으로 판단해 원점수보다 *점을 더하거나 모자란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수상 경력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강사 공개모집 공고문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수상은 유효하고, 민간 단체 수상은 제외'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간 단체 수상경력을 제출한 ◍◍◍ 등 ○명에게 *점~**점을 부여하였고, ✻✻영어회화 및 ✪✪✪✪ 과목에 지원한 ◒◒◒ 등 ○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기준으로 한 강의계획서 배점이 상(20), 중(15), 하(10)로 정해져 있음에도, 심사 배점 기준과 다르게 심의위원별로 **점~**점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하는 등 서류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강사 선발을 위한 서류심사의 기준이 되는 세부 심사 항목을 살펴보면, 강의·실무경력, 자격증, 수상 경력 등 항목은 개별 심사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명확히 심사가 가능한 항목인 반면, 강의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정성평가 대상으로, 지원자 ▥▥▥의 심사 점수 분포에서 확인되듯이 심사자에 따라 점수 산정이 다를 수 있는바,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서류심사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강의계획서에 대한 심사 기준 역시 '강의계획서 내용 평가(상 20, 중 15, 하 10)'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서류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복지관에서 실시한 20**년~20**년 사회교육강사 모집 관련 서류심사 항목 중 강의계획서 심의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원자 ◒◒◒, ◓◓◓의 경우, 20**년도에 각각 ○개 과목씩 강사 지원을 신청하면서 같은 내용의 '강의계획서 및 세부 강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음에도, 같은 심의위원이 동일한 내용의 강의

계획서를 심사하며 점수를 다르게 산정하였다.

(3) 면접대상 결정 소홀

여성복지관에서 실시한 20**년도 사회교육강사(✪✪✪✪✪✪) 공개모집 관련 서류심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 2급 강사 모집 지원자 ○명 중 ◍◍◍의 서류심사 점수가 ○순위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 면접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함에도, 관련 규정 및 모집계획과 다르게 ○순위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면접대상자)로 결정·공고하여 면접을 시행하는 등 합격자 선정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강사심의위원 제척·회피 등 소홀

「강사관리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르면 여성복지관은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우수한 강사를 선발하고자 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강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특히 공정한 면접 심사를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 위원으로 2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관은 공정심사를 위해 면접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경험 등이 풍부한 외부 위원을 위촉도록 하고, 만일 면접위원 중 강사 모집 지원자와 동일 기관 근무 등으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 회피 신청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그 대상자에 대한 심사 중단을 고려하는 등 심사의 공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여성복지관은 「20**년 사회교육강사 공개모집」과 관련해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 *.~**. *.(*일간)까지 심의위원 ○명(✰✰✰✰관장, 외부 위원 ○명)이 면접 심사를 하였고, 지원자별 현 경력 사항 및 면접심의위원별 소속기관 등을 확인한 결과, 면접 심의위원 ○명 중 ○명이 지원자가 출강하고 있는 기관의 관계자로 확인

되었다.

강사 선발에 따른 면접 심사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지원자와 관련된 동일 기관 소속의 면접위원이 심의를 회피하거나, 해당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지원자와 무관한 타 기관 소속의 외부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접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별다른 조치 없이 지원자가 출강하고 있는 기관의 관계자 ○명이 해당 지원자의 면접 심사를 그대로 추진하는 등 지원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저해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장은**

[주의] 강사 지원자의 자격 등이 공정하게 심사되도록 제출 서류 목록에 대한 명확한 공고는 물론, 단계별 합격자 결정이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확인된 증빙서류와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을 토대로 착오 없이 심사 결정된 사항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강의 관련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강의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서류심사와 구분해 면접에서 심사되도록 단계별 심사 항목 변경과 더불어, 공정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제척·회피 방안 마련 등 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여성복지관은 여성경제인 양성 및 여성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복지관 내에 여성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예비 창업자 등에게 입주 및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입주보증금 징수 관리 소홀

「운영규정」 제25조(사용료) 및 제27조(징수시기)에 따르면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 시 보증금과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입주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복지관은 센터 입주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을 입주 계약 시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하지만 실제 입주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입주자들이 모두 입주계약일 이후 보증금을 납부하였으며, ○개 업체는 입주예정일 후에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2. 입주자 퇴소 및 연장관리 소홀

「운영규정」 제20조(퇴소) 및 제21조(졸업)에 따라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소를 희망하거나 입주 계약기간이 종료된 업체는 퇴소 희망일 혹은 입주 계약기간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소 희망일(예정일)에 퇴소한다.

그러나 여성복지관은 퇴소를 희망하거나 입주 계약기간이 종료된 업체에 대하여 퇴소 희망일 혹은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운영규정」 제17조(계약기간)에 따라 입주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입주자는 입주 계약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연장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복지관은 입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입주자들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지 확인하여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입주 계약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하였다.

3. 입주업체 입주 신청 자격 확인 소홀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공개모집을 위한 각 공고문에는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미과세) 증명서(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기존사업자), 입주 지원가산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영규정」 제7조(입주신청자격)에 따르면 입주신청자격은 '입주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하거나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후 2년 이내의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관은 공개모집 접수 시 공고문에서 명시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받아 입주 신청 자격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복지관은 입주자 모집 접수 시 일부 서류를 누락하여 접수한 바 있다. 또한 공고문에는 예비 창업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입주기준일 1개월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것을 명시하여 운영 규정상 입주 신청 자격에 미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아 해당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있었다.

4.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수시모집 소홀

「운영규정」 제6조(의무)에 따르면 센터장은 입주자가 기술개발 및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성복지관은 여성경제인 양성 및 여성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센터 내 창업 부스와 창업지원실의 공실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복지관은 센터 내 ○개 실에 대하여 공실로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 수시 입주자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노력하여야 하지만 20**년, 20**년에 각각 단 한 차례의 입주자 모집을 하였을 뿐이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장은

[주의] ①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시 운영 규정에 따라 입주보증금을 기한 내 수납하시고 입주자 입소 및 퇴소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센터 입주자 수시 모집을 통하여 공실 운영을 최소화하여 관내 여성경제인들에 창업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여성복지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따라 20**년 *월 인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로 지정되어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직업교육훈련생 미반환 자비 부담금 운용 소홀

여성복지관 새일센터는 「20**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이하 “사업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을 제외한 훈련생으로부터 자비 부담금을 받고 있으며, 교육 수료 시 5만 원을 1차 환급하고 교육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 시 5만 원을 추가 환급하고 있다.

「사업지침」 제3장 제2절 ‘직업교육훈련’에 따르면 미반환된 자비 부담금은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경비(직업교육훈련 과정 수요조사 비용,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비용, 훈련수료식 비용, 수료자 격려금, 취업성공지원금 등)로 사용한다.

또한 여성복지관은 20**년도 여성복지관 종합감사 시 미반환된 자비 부담금에

대하여 직업훈련 운영을 위한 경비로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새일센터는 미반환된 자비 부담금에 대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 매년 '직업교육훈련 미반환 자비 부담금 사용계획'은 수립하였지만 이에 따른 실제 집행은 감사일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었다.

2. 새일여성인턴 사업 지도점검 소홀

「사업지침」 제3장 제3절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따르면 새일센터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인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용을 관리하며 새일센터 자체 계획하에 인턴 기간 동안 현장 지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인턴 대상의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심층 상담과 기업의 인턴 근로 보호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초 인턴 사업 참여 기업 및 5인 미만 사업장, 민원 발생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관 새일센터는 인턴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현장 지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업(최초 참여업체, 5인 미만 업체)만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장은**

[주의] ① 미반환된 직업교육훈련 자비 부담금에 대하여 2021년 감사 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직업훈련 운영을 위한 경비로 적정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업에 대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인턴 기간 동안 현장 지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여성복지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과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의 원활한 취업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직업·취업상담사)를 총 *회에 걸쳐 총 ○명을 공개 채용하였다.

1. 블라인드 채용 절차 소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는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이하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직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관은 『인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직업·취업상담사) 공개 채용 시 공고문의 응시원서에 성별, 용모, 연령(생년월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자에게 채용 예정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2. '직업·취업상담사' 자격 기준 적용 소홀

「20**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직원의 임면 및 복무" 편에서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관은 직업·취업상담사 채용 시 모집 공고에 응시 자격 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로 한정하여 채용하여,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직업상담·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응시 기회에 제한을 두는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의 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데 소홀히 하였다.

3. 채용 서류심사 소홀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성·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 검정을 포함한다), 5. 면접시험의 시험방식으로 채용하되,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부서는 공무직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 단위, 지원 자격, 채용 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 배수, 우대사항 및 동점자 처리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서류전형의 심사 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공무직등 채용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여성복지관은 20**년도 여성복지관 인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해 「20**년도 인천새일센터 기간제근로자(직업·취업상담사) 공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개 채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성복지관에서는 응시원서 접수 종료(20**.*.*.) 후 「20**년 인천새일센터 기간제근로자(직업·취업상담사) 채용 서류 접수 결과 및 서류심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채용 계획서에서 정한 서류심사표의 평가 항목 일부인 지원 분야 자격증 세부 기준을 응시 자격 조건인 직업상담사로 변경하여 심사하는 등 채용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채용공고에서 응시 자격으로 정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정보기술자격(ITQ)자격증 B등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항목을 서류심사에서 적용하지 않아 해당 자격증을 제출한 □□□, □□□, □□□은 자격증 소지에 따른 우대를 받지 못하는 등 채용 서류심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장은**

[시정] 채용 예정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서식)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하자 검사 절차 미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목적물의 하자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최종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 또는 하자 검사를 위임받은 검사자는 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따로 하자 만료검사를

하고, 검사 완료 후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복지관은 총 ■건의 공사계약 중 '** *** ** * ** 보수공사 시행' 외 □건에 대해서 최종검사 완료 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법령에 따른 하자 검사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하자 보수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에너지 절약 등 자체교육 미실시 및 전문교육 미이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여성복지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6호, 2023.9.1.)에 따라,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수립하고, 이의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에너지 지킴이,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관은 20**년에는 자체 교육을 시행 하지 않았고, 20**년과 20**년에는 에너지 지킴이,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 중 1명 이상이 전문기관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나 수료하지 못하는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장은**

[주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여성복지관은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및 다수 이용자의 안전과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대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담당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파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하 “개인정보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였다.

「개인정보 관리계획」 제3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 제1항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가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4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조치 등 안전성 확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하 “운영관리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38조(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는 관리책임자가 처리하는 자기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 확인을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 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인영상정보제공 시 요청·제공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요청기관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접근권한자)만이 열람 및 존재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열람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성복지관에서는 접근 권한자의 입회하에 ◇◇◇이 조작하여 열람하는 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장은**

[주의]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준수하여 접근권한자 이외에는 영상정보기기를 조작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1	「2022년 인천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구직 정보 안내 및 현장 면접 기회 제공으로 구직자 취업 자신감 고취 및 재도약 지원

□ 사업개요

○ 행 사 명 : 일자리를 잡(Job)아라! 「2022년 인천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일　　시 : 2022. 10. 20.(목) 14:00 ~ 17:00

○ 주　　최 :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인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참여대상 : 기업체 30개(직접 15, 간접15), 구직자 600여명

○ 행사내용

구 분	행 사 내 용
취업지원관	- 구직자 취업컨설팅 및 현장참여기업 매칭 - 이력서 작성 코칭
채 용 관	- 직접참여 업체 채용 현장 면접 진행 - 간접참여 업체 면접희망자 이력서 접수 대행(사후 연계)
홍 보 관	- 인천고용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 홍보 - 여성복지관 교육프로그램 및 여성창업지원센터 홍보
부대행사관	- 이력서 무료사진 촬영 지원 및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 추진실적

○ 참여업체 : 기업체 30개(직접 15, 간접15) 총 240명 구인

○ 면접인원 : 총 409명(현장면접 315명, 2차면접 94명)

○ 채용인원 : 총 22명(직접 22명)

□ 기대효과

○ 다양한 취업 정보 및 폭넓은 구직 기회 제공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 확대

수범사례 2	수강생 재능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 미용, 제과제빵, 도시락&샌드위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시민들과 나누는 봉사활동으로 여성사회활동 및 공동체 의식 강화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 중

○ 장 소 : 요양원,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 참여대상 : 교육강사 및 수강생

○ 주요내용

- 지역사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정 및 시설에 물품 등 지원 (미용, 케이크, 도시락&샌드위치 등)
-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무료나눔 활동 전개

□ 추진실적

○ 무료나눔 봉사활동

- '21년: 도배, 빵, 바리스타, 의류, 한복, 폐백 등 10강좌 170명 참여
- '22년: 미용, 빵, 의류, 한복, 도시락&샌드위치, 쿠키 등 8강좌 225명 참여
- '23년: 미용, 빵, 쿠키, 도시락&샌드위치 등 4강좌 187명 참여

□ 기대효과

○ 지역사회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으로 공동체 의식 형성

○ 수강생들에게 상호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강화

수범사례 3	기능대회참여를 통한 여성의 능력 개발

❖ 양장기능사 및 전통한복 교육을 통한 기능대회 참여로 우수한 여성 기능인을 발굴 및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 중

○ 장　　소 : 인천 및 전국일원(인천기능경기위원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 참여대상 : 수강생

○ 주요내용 : 대회출전선수 특강훈련 및 장비수송지원 등

□ 추진실적

○ '21년 ~ '23년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구 분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계	한 복	의상디자인	계	한 복	의상디자인
계	17	10	7	7	4	3
2021년	6	금1, 은1, 동1, 장려1	금1, 동1	3	은1,장려1	장려1
2022년	5	금1, 동1, 장려 1	금1, 동1	1	-	동1
2023년	6	금1, 은1, 동 1	금1, 동1, 장려1	3	장려2	장려1

□ 기대효과

○ 양장기능사, 전통한복 수업참여로 여성의 성취감 고취

○ 인천 및 전국기능대회 참여를 통한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